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에서 음악 저작물의 복제적 사용에 관한 연구

김현부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hyunboo@gmail.com

A Study on a duplicate use of musical works for the online music streaming

Hyunboo Kim
Dept. of Applied Music, Baekseok University

요 약

음악저작물을 복제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창작 형태로 복제되는 경우 그 이용허락의 범위와 허락의 주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커버곡(cover)이나 리메이크(remake)곡이 유튜브 등의 sns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유통하고자 할 때 이용허락의 범위와 허락의 당사자가 불분명함으로 인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의도치 않는 침해가 발생하는 현상이 비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커버와 리메이크의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범위와 허락의 주체 그리고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본론

1. 서론

2.1 음악저작물과 음반

1.1 음악저작물의 복제적 이용

소셜 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음악은 중요한 콘텐츠이다. 음악은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음악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커버와 리메이크 같은 복제적 이용에 대하여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들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한 곡에 대한 보상이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해당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저작자의 수익을 원천적으로 보장하는 수익분배구조임을 미루어 볼 때 복제적 이용에 대한 허락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커버나 리메이크 같은 음악의 복제적 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음악저작물, 음반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음반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인 편곡자의 권리와 실연자의 권리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음반을 저작인접물이 아닌 음악저작물로 인정하여 음악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한국 문화와 음악 융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음음을 사용하여 표현한 저작물로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¹⁾하고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²⁾한다. 멜로디와 가사 즉 음악저작물만으로는 음반으로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은 편곡, 실연의 과정을 거쳐 음반으로 제작된다.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과정 즉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곡자의 역할과 저작인접권중 실연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음악저작물 음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곡자의 역할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형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편곡에 사용하는 음악저작물의 변경이 발생하기 않는 이유 때문에 편곡의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의 역할 특히 대중음악에서의 실연자의 역할은 완성된 음악저작물을 실연, 가창등으로 표현하는 행

1)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3쪽

2) 저작권법, 제2조 제5항, 음반의 정의

위가 아닌 창작의 행위이다. 즉흥적으로 창작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쉬워 보일 수는 있으나 높은 수준의 음악을 나타내며 실연과 창작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과 기교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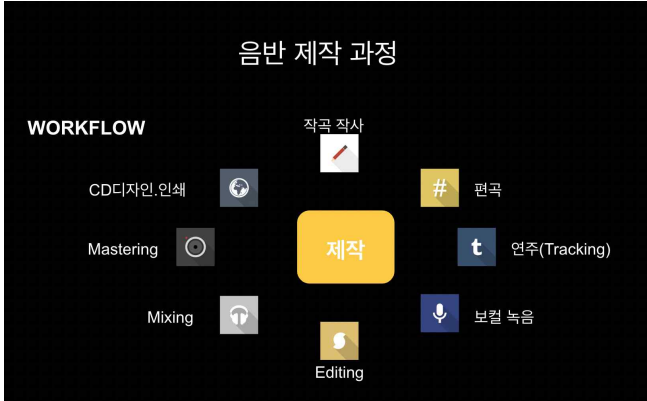


그림 1. 음반제작과정

그림1.의 음반제작과정을 살펴보면 작곡, 작사의 과정에서 음악저작물이 창작되고 이 음악저작물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곡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 편곡을 이용하여 연주, 가창을 지나며 음반으로 제작하기에 적합한 원반multi-track이 만들어지고 원반을 믹스, 마스터링하여 음반으로 제작한다.

2.2 뮤직 스트리밍 수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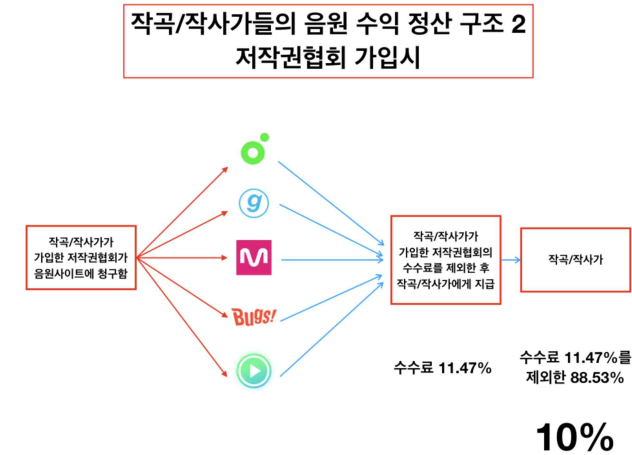


그림 2. 음원 수익 정산 구조

음악 저작권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분배 구조가 확립이 되지 않았던 이전 당시, 음악저작물을 복제적으로 이용하여 스트리밍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원천적으로 저작권자의 수익이 보장된다.

그림2와 같이 저작자의 수익이 원천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그리고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라

면 유형의 복제물인 CD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음반제작승인과 같은 과정이 이미 음원 수익 정산 구조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의 복제적 이용 역시 원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3.1 음악저작물의 음반사용허락

커버나 리메이크와 같이 여러 형태로 곡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해당곡이 유행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명의 음악가가 유명한 곡을 이용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는 경우도 흔히 볼 수도 있다. 음악이 유행하여 대중의 인지도를 얻게되는 것은 단순한 문화의 융성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보면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저작물의 복제적 이용은 저작자, 이용자,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원저작물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곡자의 권리를 수익구조에서 지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실연자의 창작적 기여의 보호를 위해 음반을 저작인접물이 아닌 저작물로 보호하여 올바른 음악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는 것은 문화와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